

2026년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모집 공고

노원구 2026년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노원구 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공개 경쟁)

채 용 분 야	근무기간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전화상담, 현장조사)	'26. 8. 3. ~ '26. 11. 30.	10명	징수과	- 체납자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서 작성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체납분류 보고 - 체납업무 보조 등

※ 채용 후 업무 여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응시자는 1개 자치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함.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공고일(' 26.6.22.)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둔 자
- 전화 및 현장 조사 업무에 지장이 없고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등의 가족이 아닌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같은 자격증의 경우 상위자격만 인정)

다. 가점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중복가점 불가

3. 고용조건

○ 근무기간: 2026. 8. 3. ~ 11. 30.

○ 근무시간: 주5일, 1일 6시간(10:00 ~ 17:00, 휴게시간 60분 근로시간 중 부여)

○ 보수조건: 시간당 12,121원(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주휴수당 지급)

※ 4대 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 용 공 고	2026. 6. 22.(월) ~ 7. 3.(금)	노원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체납관리단 사이트
원 서 접 수	2026. 7. 6.(월) ~ 7. 10.(금)	서울시 체납관리단 사이트
1차합격자 발표	2026. 7. 13.(월)	노원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체납관리단 사이트
2 차 면 접	2026. 7. 14.(화) ~ 7. 16.(목)	노원구청(장소 및 일시 추후 통보)
합 격 자 발 표	2026. 7. 22.(수)	노원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체납관리단 사이트
신 규 채 용	2026. 8. 3.(월)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서울시 체납관리단 사이트 주소 : <https://seoultax.applyin.co.kr/>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1. 접수처 : 서울시 체납관리단 사이트(<https://seoultax.applyin.co.kr/>)

- 원서작성 및 제출방법

1. 응시원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서명
2. 온라인 제출시 작성한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제출하되 파일명 '서류제목_응시자이름' 으로 업로드 할 것
예) 응시원서_홍길동, 경력증명서 등_홍길동

○ 심사방법

가. 1차심사(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서울시 체납관리단 사이트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이 응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관련 기타 서류 등 제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나. 2차심사(면접심사) : 노원구청(장소 및 일시 추후 통보)

-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청년(공고일현재 만 39세 이하), ② 경력 단절 여성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서울시 체납관리단 사이트 공고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 ※ 최종합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이수 후 업무에 배치함.

라.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30%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중도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 ② 이력서 1부(연락처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③ 자기소개서 1부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각 1부
- ⑦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선택제출

- ①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③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가점 대상 증빙서류 등)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타 자치구 체납자 실태조사원 모집에 중복 지원이 불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기 바람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 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8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노원구청 징수과 체납관리단 담당자 (☎ 02-2116-3526,3528)
-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